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19년 6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금융감독원)

세무 및 법률정보

-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회계감독 선진화방안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출처: 금융감독원, 2019. 6. 13]

회의개요

1. 회의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6.13 일(목) 오전 한국거래소에서기업, 회계법인, 학계 및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 현행 회계감독체계를 진단하고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9.6.13(목), 10:30 ~ 11:30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거래소 부이사장, 기업, 회계법인, 학계 대표 등
- 주요 논의사항 :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 청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내용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가. 회계감독 선진화 기본방향

□ 감독방식을 사전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

- 선진 회계감독의 중요한 특징은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지도」에 집중하고 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한다는 점
- 과거 사후적발·제재 감독의 한계*를 인정하고,
 - * 긴 상장사 감리주기('16~'18년 기준 20년)로 인한 신속한 투자자 보호 미흡, "시장의 낮은 역량 → 규제·제재 강화 → 시장의 감독 의존도 심화" 반복 등
 - 앞으로 시장참여자들이 투자자 등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helper)」 역할을 강화

□ 시장의 전문성 존중

- 시장 참가자들이 국제회계기준(IFRS) 등에 따른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제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
 - 감독기관이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 '판단과정' (due process)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감독하는데 초점

□ 시장과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 제고

- 감리인력의 부족 등으로 상장준비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나타나는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리인력을 확대하여 보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인정할 필요
 - * 회계법인 감리인력: (금감원) 6명 Vs. (미국) 약 900여명
 - 시장참여자에 역할을 부여할 수 있거나 시장 스스로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는 분야는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

나. 관계기관에 대한 당부사항

□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

○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

- 이번 대책이 과거 익숙한 방식에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흡수되어 버린다면 회계개혁은 “시지푸스의 바위”와 같이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할 무거운 숙제로 남게 될 것

○ 과거에도 다수의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했지만 기대한 성과를 얻은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취지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

- 이번 대책에 담긴 취지와 변화방향이 각 기관 조직 내 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주길 바람

□ 현장과의 소통 강화

○ 기업현장에서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려면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함

○ 회계개혁 등으로 발생한 시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선도중진*(先導中進)”의 업무자세로 임해주길 바람

* 정책 추진 시 선두에서 목표를 세우고 이끌어 나갈 책무가 있지만, 중간에서 협력과 조화를 만들어 가면서 추진해야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

□ 흔들리지 않는 개혁의지

○ 관계기관이 확고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one-voice)를 내야 시장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기업도 원칙중심 회계기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체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해 주길 바람

- 외부감사인도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책임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기업현장에서 그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람

회계감독
선진화방안
주요내용

3.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가. 기업회계 감독방식의 선진화

□ (기업) 재무제표 심사*(review) 중심의 감독시스템 구축

* 기업의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 (※ 재무제표 심사결과 중대한 회계부정인 경우 감리 착수)

○ (기존) 감리를 통한 회계기준 위반 적발. 제재에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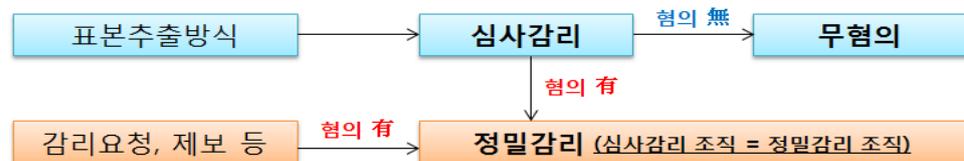
○ (개선) 선진국에 일반화된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실시

* 주요 세부과제: 금강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 분리, 재무제표 심사기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설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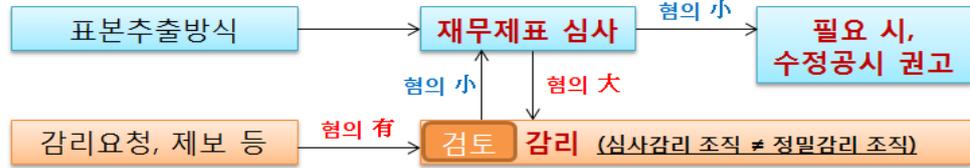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요 내용]

- .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
- .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인 경우에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

-현행방식



-개정안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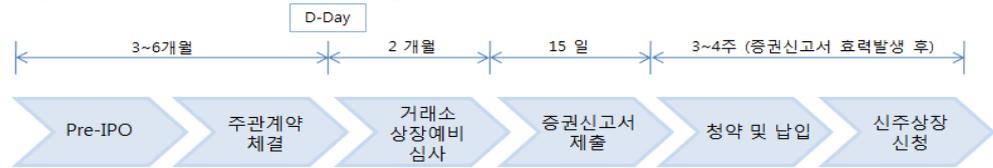
- 상장사 감독주기 단축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자 보호
- 중대한 회계부정에 감리역량을 집중

□ (상장준비기업)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감독기관의 재무제표 심사를 효율화

○ (기준) 감리대상이 아닌 상장준비기업(상장준비기업의 약 60%)은 상장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으며, 감리로 인한 상장일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어 왔음

- 감리를 받지 않은 상장준비기업(40%)의 경우에 거래소 상장심사나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회계투명성 관련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참고: 상장 절차 (상장예비심사 신청부터 상장까지 약 4~5 개월 소요) >



○ (개선) 상장준비단계부터 상장 후까지 관계기관 간 역할을 분담

① (상장주관사) 재무제표 확인 책임 강화

- 재무제표 확인 등 상장주관사의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시 과징금 한도(현재 20 억원)를 대폭 상향

* (중전) 상장주관사가 직접 기술한 내용에 한정 → (변경안) 재무제표를 포함한 발행인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기재누락 적발 책임 추가

- 상장주관사는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내역을 상장심사 신청 시 거래소에 제출

* IFRS 적용 및 주요 회계이슈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주식의 충실성 등

② (거래소) 상장심사 시 회계투명성 관련 점검 강화

- 상장준비기업이 충분한 재무정보 공시 역량을 갖추도록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

-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관련 확인 내역의 적정성 점검

③ (회계감독기관)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무제표 심사 실시

-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별 기준의 정밀성 제고

* (현행) 기업 규모, 재무실적 중심 → (개선예) 주요 재무지표의 동종업종 평균과의 차이, 주식분산도 등 종합 고려 (심사 비중을 현재보다 축소)

- 자산 1 조원 이상인 상장준비기업은 금감원이 심사업무 수행

* 금감원은 '17 년부터 상장준비기업 중 사업보고서 공시법인만 감리를 실시해왔음

-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

➡ 기대효과

- 감리를 받지 않는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회계감독 공백 보완
- 상장준비기업의 상장일정 예측가능성 제고 및 상장부담 완화

나.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 강화

□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 구축

- 심사.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확대: (현행) 금감원*
→ (개선) 회계기준원 추가
 - * 현재는 감리 중 쟁점이 되는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 창구가 금감원으로 제한됨
- 회계기준원.회계감독기관은 매년 IFRS 질의회신 내용 및 재무제표 심사.감리 조치결과를 사례화하여 공개
 - 과거 약 10년간 축적된 사례는 '19년말~'21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

➡ 기대효과

-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
- 시장의 국제회계기준 적용 역량 제고

□ 기업의 재무제표 오류 자진정정 부담 완화

- (기존) 회계오류 정정 시 감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자진정정 위축요인으로 작용하고, 외부감사인 요구 등에 따른 잦은 정정이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개선) 자진정정에 대해 종전의 정밀감리보다 완화된 형태인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관련 금융위 규정 개정 완료, '18.10월)
 - 변경된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前期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전기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유도*
 - *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 준수여부 점검 강화

➡ 기대효과

- 회계기준 적용에 대한 전기 외부감사인과 변경된 외부감사인 간의 분쟁 등에 따른 재무제표 자진정정 부담 완화

다. 외부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역량 강화

□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감리*의 목적과 방식 전환

- *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기준 준수여부를 감독

< 추진 배경 >

- '19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43개사)는 전년 대비 34% 증가
 -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중요 회계이슈에 대해 미리 의사소통을 하여 해소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얼마 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감사의견이 변경됨으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

○ (기존) 기업의 회계기준 위반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위반사실 관련 감사절차 준수여부를 확인

- * (예) 매출채권 회수가능성 검토, 재고실사 입회, 자산취득 증빙 확인 등
- 외부감사인 스스로 감사절차의 輕重을 고려하여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효율성을 위해 업무를 연중 분산시키기가 어려움

○ (개선)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의 취지*에 따라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하였는지를 중점 점검

* 국제감사기준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감사절차를 설계하도록 규율하며, 모든 계정에 동일한 입증절차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 각 재무정보의 리스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가능

< 향후 감사보고서 감리 시 중점 점검할 감사절차(예) >

① 계정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지(감사기준 320)

② 기업 경영리스크 및 회계처리 내부통제 수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집중 감사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감사기준 226.315)

③ 감사위험을 고려하여 감사절차를 효율적으로 설계하였는지(감사기준 330)

➔ 기대효과

- 선진국에 일반화된 연중 상시감사(No Surprise Audit) 구현
- 감사절차의 합리화로 감사보수의 과도한 상승 방지

□ (중소회계법인)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도입

○ (기존) 감사품질관리 감리는 열악한 감독자원 1), 제재근거 미비 2)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았던 측면

1) 금감원은 6 명이 약 40 여개 회계법인을 감독하며, 공인회계사회는 전담인력이 없음

2) 외부감사법 개정('18.11 월 시행)으로 품질관리기준 위반 시 행정조치가 가능해짐

- 중소기업법인 및 감사반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감사품질관리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음

* 독립성 의무 준수, 감사시간 집계시스템 마련, 감사조서 관리 등

○ (개선) 외부감사인의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개선계획 포함)를 감독기관에 제출

* 금감원·공인회계사회는 자체평가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

- 외부감사인 감리를 저인망식이 아닌 자체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

* 자체평가 결과, 회계법인의 투명성보고서 등 공시내용,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이 매년 선정

➔ 기대효과

-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가능
-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함에 따라 감리 효율성 제고

향후 추진일정

4. 향후 추진일정

□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금년 3분기 중 개정 완료

□ 금융위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19.10 월까지 개정 완료

○ 상장주관사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년 중 마련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마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11일(화)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확정하였습니다. 향후 동 개편방안을 '19년 정부 세법개정안(상속증여세법)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9월초)할 예정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 (현행) 공제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
- (개정) 현행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
- (개정이유) 급변하는 경제 환경, 타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업종·자산·고용유지 등 사후관리기간 단축 필요

* 독일: 7년(100% 공제시), 일본: 5년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2.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 (현행) 사후관리기간 중 기존 주업종 유지의무 부여,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변경은 허용
- (개정)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중분류 내까지 허용. 예외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사·승인*을 통해 중분류 범위 밖으로의 업종 변경도 허용

* (위원회)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승인기준) 기존 사업관련성, 기존 고용인원 승계가능성 등 고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

○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및 경영 노하우 등의 유의미한 전수, 안정적 고용 승계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자산유지 의무 완화

3. 자산유지 의무 완화

- (현행)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 금지
 - 수용·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처분 등으로 자산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허용
- (개정)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사유 추가
 -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 추가적 예외 인정
- (개정이유) 업종 변경 등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자산의 처분 및 신규 자산의 취득 필요성이 발생

* 중소기업 대상 조사결과, 사후관리요건 중 사후관리기간 단축 및 자산유지의무 완화를 최우선적으로 희망(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18년 중기중앙회)

고용유지 의무 완화

4. 고용유지 의무 완화

- (현행)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 유지
 - 사후관리기간 10년간 통산하여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 유지(중견기업의 경우 120% 이상 유지)
- (개정) 중견기업의 사후관리기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 (기준 인원의 120%→ 100%)
- (개정이유) 안정적 고용유지는 가업상속지원의 주요한 정책적 목적에 해당하나,
 - 생산설비 자동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부담임을 감안

탈세·회계부정 기업인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5. 탈세·회계부정 기업인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 (신설)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추징(사후)
 - ①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 ②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회계부정으로,
 - ③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처벌받은 경우로서,
 - ④징역형 또는 일정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및 외감법 상 가중처벌되는 수준의 탈세·회계부정에 따른 벌금형
- (신설이유) 사후관리 완화에 상응한 성실경영 책임 강화 필요

연부연납 특례대상
확대

6. 연부연납 특례대상 확대

- (현행) 가업상속공제요건 충족시, 연부연납 특례* 적용
 - *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시 10년 분할 납부, 50% 이상시 20년 분할 납부(일반 연부연납은 5년 분할납부 허용)
- (개정)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요건을 완화
 - (대상기업)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전체 중소·중견기업
 -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 경영·지분보유 기간* 단축(10년→ 5년)
 - * 10년 이상 일정 지분보유(상장 30%, 비상장 50%)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재직
 - (상속인 요건)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 삭제
-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확보 부담 완화 필요성 및 항구적 감면이 아닌 분납(이자도 가산)인 점을 고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15항(2019.02.12-29529호)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 2019.05.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외 거래처(중국)로부터 로열티(사용료소득)를 지급받고 총지급액의 10%(제한세율)를 중국에 납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있음.
-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원천지국(고정사업장 없음)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등을 안분하여 손금으로 차감하고 있음.

(질의내용)

-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금액이 국내발생 직·간접비용만 있을 때에 동 금액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의 이월배제규정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산정 방법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15항(2019.02.12-29529호) 및 기 질의회신 사례(재국조-794, 2018.08.22.)를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하 “직간접비용”)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함.

-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2019.05.31)

(사실관계)

- 2018.3.7. 대한민국 일반여권으로 자녀(시민권자)가 있는 미국으로 방문목적 출국
- 2018.5.7. 미국 체류기간 중 가족사유로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부모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함.
- 2018.10.3. 미국 영주권 수속과정 중 대한민국 일반여권으로 귀국
- 2018.11.1. 대한민국 일반여권으로 미국으로 다시 출국
 - 미국체류 중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관할 재외 공관을 통해 거주여권을 신청받을 예정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세 적용 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때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내국법인 甲을 100% 지배하는 일본법인 B가 B법인을 100% 지배하는 다른 일본법인 A에 내국법인 甲주식 100%를 현물배당 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925, 2019.05.09)

(사실관계)

- A법인은 일본에 소재한 법인으로 일본 자회사 B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 B법인은 대한민국 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甲법인(비상장)의 주식을 100% 소유함.
- B법인은 내국법인인 甲법인의 지분 100%를 모회사인 A법인에 현물배당할 예정임.

(질의내용)

- 일본법인인 B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甲법인의 주식을 일본법인인 A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질의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비상장법인(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B)이 그를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법인(A)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현물배당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그 수입금액(배당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국내원천소득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정하는 정상가격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